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6. 11. 28.>

기록·비치하여야 할 사항(제9조 관련)
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1.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, 반입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검색 기록	검색한 때마다	10년
2. 방호구역에 대한 탐지 및 순찰 기록	탐지 및 순찰한 때마다	10년
3.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실시 기록	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마다	10년
4. 물리적방호 시설·설비 등의 설치·점검 및 보수 기록	설치·점검 및 보수한 때마다	10년
5. 물리적방호 시설·설비의 설치에 관한 설계 기록	설계한 때마다	30년
6.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기록	대응조치한 때마다	30년
7.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물리적·전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기기에 대한 접근 기록	접근한 때마다	10년
8.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설치·점검 및 보수 기록	설치·점검 및 보수한 때마다	10년
9.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여부 점검 기록	점검한 때마다	10년
10.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에 관한 기록	대응조치한 때마다	30년